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20
------------	------

발의연월일 : 2017. 9. 1.

발의자 : 설훈 · 소병훈 · 위성곤
박홍근 · 유은혜 · 안민석
권칠승 · 조승래 · 신동근
이원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학의 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5년마다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결과 등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

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의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도서관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8조의2 신설).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종합계획 수립·시행에”를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대학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①·②(생략) <u><신 설></u>	제8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①·②(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대학도서관진흥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⑤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 제8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
하여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